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- 96호

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4조(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의 설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(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 기구의 지정 등)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·공고합니다.

2025년 1월 31일

국토교통부장관

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(변경)

1. 지정기관(변경없음)

: 한국토지주택공사, 주택도시보증공사, 한국부동산원, 한국국토정보공사, 국토연구원, 한국교통연구원, 한국법제연구원 등 7곳

2. 수행업무(변경)

가.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

- 노후계획도시정비 관련 시책의 발굴
- 노후계획도시정비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
- 기본방침, 기본계획,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등 지원
-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·관리 지원
- 노후계획도시정비 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등의 업무
- 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지원

나. 가목의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기구별 위탁 및 대행 업무

기관명	위탁 및 대행 업무
한국토지주택공사	○ 이주지원 컨설팅 및 수립 지원 ○ 이주지원 기본방침 등에 대한 정책지원 ○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 ○ 특별정비계획 수립 컨설팅 및 관리 지원 ○ 노후장기·공공임대주택 정비 및 운영·관리 지원 ○ 공공시행 관련 주민컨설팅 및 지자체 업무지원
주택도시보증공사	○ 노후계획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금융 관련 운영 등 지원 ○ 금융기법을 활용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원방안 마련 ○ 미래도시펀드 및 공공기여금 유동화 운영 총괄,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 취급 ○ 노후계획도시정비 금융 관련 행사, 상담 등 활동 지원
한국부동산원	○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○ 재건축사업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 지원 ○ 정비예정구역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성 검토 지원 ○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산출 및 검증 등 교육지원 ○ 정비사업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 등 분쟁 조정 지원 ○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현황조사 및 부동산 가격조사 ○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
한국국토정보공사	○ 플랫폼 기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화서비스의 활용으로 신속한 정비사업 지원 ○ 플랫폼 운영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체계적 추진과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지원 ○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본인인증과 동의, 의결사항 등에 대한 디지털인증 서비스 지원 ○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 원스톱 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○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중 신청하는 지적측량과 제반 업무의 신속한 처리 지원
국토연구원	○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작성 지원 ○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컨설팅 및 수립 지원 ○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협의 또는 승인업무 지원 ○ 특별위원회 운영 및 심의 지원 ○ 노후계획도시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조사·연구
한국교통연구원	○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중 광역교통 관련 컨설팅 및 수립지원 ○ 노후계획도시정비 제도발전을 위한 광역교통 관련 조사·연구
한국법제연구원	○ 노후계획도시정비법령 제·개정 및 개선 방안 검토 지원 ○ 노후계획도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표준조례 (안) 수립 및 조례 제·개정 시 컨설팅 지원